E - 157 - 2016

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에 관한 기술지침

2016. 11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작성자 :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류보혁
- 제·개정 경과
- 2016년 11월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관련규격 및 자료
- OSHA 29 CFR 1910(Occupational Safety & Health Standards)
- NFPA 70E(Standard for Electrical Safety in the Workplace)
- HSG 85 Electricity at Work: safe working practices
-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(위험성평가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3장 제3절(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)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(www.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6년 11월 30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0조(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)」에 따라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 범위

- (1) 이 지침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·기구 또는 전로(이하 "전기설비"라 한다)의 설치·해체·정비·점검(설비의 유효성을 설비,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점검으로 한정한다) 등의 작업(이하 "전기작업"이라 한다)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- (2) 이 지침은 다음의 설비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
 - (가) 선박, 철도차량, 항공기, 자동 차량 등에 설치된 설비
 - (나) 광산의 지하 시설물
 - (다) 철도차량 전용의 발전, 송전, 배전용의 레일 설비
 - (라) 신호 및 통신전용 설비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전기설비(Electrical equipment)"라 함은 전기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, 즉 발전·송전·변전·정류·제어·저장·측정 또는 사용에 관련된 제반 설비를 말한다.
 - (나) "유자격자(Qualified person)"라 함은 서면으로 특정 책임 및 의무를 지도록 사업주가 임명한 작업자를 말한다. 임명된 사람은 교육과 자격증 또는 경험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.
 - (다) "무자격자(Unqualified person)"라 함은 전기작업과 관련된 교육훈련이나 경험

등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작업자를 말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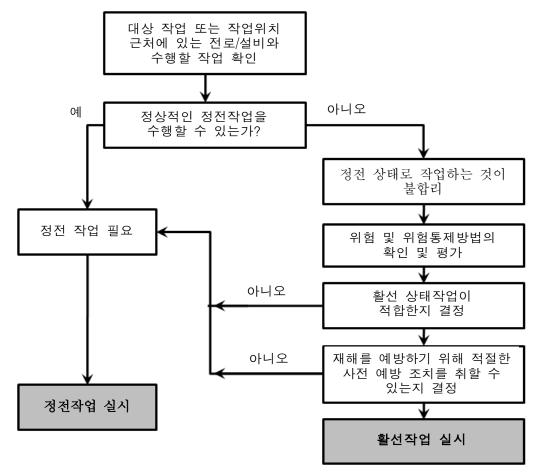
- (라) "정전작업(Work for stoppage of electric current)"이라 함은 전선로를 개로한 후 수행하는 당해 전선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·점검·수리·도 장 등의 작업을 말한다.
- (마) "단로기(Disconnecting or isolating switch)"라 함은 전기회로 내의 접속을 바꾸기 위해 또는 회로 또는 장치를 전원으로부터 절연하기 위해 이용되는 기계적인 개폐장치를 말한다.
- (바) "전기작업 안전조건(Electrically safe work condition)"이라 함은 충전부로 부터 분리된 전선, 기기의 위 또는 부근에서 작업하는 경우, 관련 지침에 따라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하고 전압이 있는지를 시험하고 필요시에 단락접지를 하고 실시하는 작업을 말한다.
- (사) "충전된(Energized)"이라 함은 서로 다른 전압의 전원에 전기적으로 접속 되어 있거나 인접된 접지면과 상당한 전위차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.
- (아) "절연된(Insulated)"이라 함은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절연체(공간 포함)로 다른 도전성 표면과 분리된 상태를 말한다.
- (자) "전격 위험(Shock hazard)"이라 함은 충전부가 노출된 전선이나 기기 등 에 최소한의 공기 절연거리 이내로 가깝게 접근하거나 접촉 시 발생하는 에너지 방출과 관련된 위험한 상태를 말한다.
- (차) "활선근접작업(Working near)"이라 함은 전기적으로 안전한 작업조건에 속하지 않는 노출된 충전전선 또는 기기 등의 접근한계 내에서의 작업을 말한다.
- (카) "활선작업(Working on)"이라 함은 노출 충전된 전선이나 기기 등을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손, 발 또는 신체의 기타 부분으로 만 지거나 시험 기기로 접촉하는 것을 말한다.
- (2)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정전작업의 원칙

4.1 일반 원칙

(1) 전기작업 중 활선작업은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정전작업이 원칙임을 유의한다.

(2) 작업 대상 설비 또는 내용 확인 시에 전기작업을 정전상태에서 할지 아니면 활선상 태에서 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, 이 평가 및 판단 절차는 <그림 1>과 같다.



<그림 1> 정전작업 또는 활선작업 여부의 판단 절차

- (3) 정전된 기기에서 작업하기 전에 정전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.
 - (가) 정전확인용 검전기는 감전 위험이 없고 사용시 단락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, 적합한 절연과 퓨즈 또는 에너지 제한장치가 있어야 한다.
 - (나) 검전기는 사용 전후에 시험하여야 하며, 이것은 저전력 출력을 가진 검증 장치로 할 수 있다. 검전기를 시험하기 위해 활선회로가 사용된다면, 감전 및 회로 단락 방지를 위한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한다.
 - (다) 검전기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교육은 전로에서의 예상치 못한 사용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
 - (라) 오 조작으로 잘못설정 될 수 있는 멀티미터는 정전 검증용으로는 권장하지 않는다. 회로를 점검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계측기는 정기적으로 검사되고 정상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.

- (4) 이것은 작업 대상 전로에 접근 또는 개폐조작을 하는 단계로, 작업자가 수행하는 작업시스템과 작업에 대한 이해에 대한 마지막 확인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.
 - (가) 작업자가 1명 이상이라면, 작업책임자의 작업 이해도와 작업자는 책임자가 부여한 작업만 수행해야 함을 알고 있는 지를 확인해야한다.
 - (나) 작업자는 자신의 직관에 의해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.
- (5) 사업주는 작업자들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한다.
 - (가) 규정이 준수되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일에 대하여 정기 점검을 수행하는 것이다. 때때로, 이러한 점검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일의 감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(나) 조직에서는 오히려 문서화된 안전규정이나 작업의 안전 시스템을 정기적이고 구조적으로 관리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.
 - (다) 이것은 만약 작업이 현장에서 진행 중이거나 다른 사업장 안에서 또는 이동하면 서 하는 작업자의 경우 아주 중요하다.
- 4.2 관련 정보, 기구 및 계측기의 준비와 작업자의 숙지 확인
 - (1) 작업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다면, 작업자에게는 적절한 정보, 공구, 계측기, 안전설비 및 지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.
 - (가) 올바른 정보에는 기기/회로의 도면 제조자/설치자의 지침 자료를 포함한다.
 - (나) 적절한 공구에는 적정하게 정비되고 정기적으로 검사된 절연 공구를 말한다.

5.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

5.1 정전작업계획서 작성

(1) 정전작업이라 하여도 작업 중 오조작으로 인하여 전기설비가 충전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(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 4]의 5 · 관련).

E - 157 - 2016

- ① 작업의 목적 및 내용
- ② 작업자의 자격 및 인원
- ③ 작업 범위, 작업책임자 임명, 전격·아크 섬광·아크 폭발 등 전기 위험 요인 파악, 접근 한계거리,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
- ④ 전로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 재투입 절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
- ⑤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, 활선작업용 기구·장치 등의 준비·점검·착용·사용 등 에 관한 사항
- ⑥ 점검·시운전을 위한 일시 운전, 작업 중단 등에 관한 사항
- ⑦ 교대 근무 시 근무 인계에 관한 사항
- ⑧ 전기작업 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
- ⑨ 전기안전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작성된 전기 안전작업계획서의 평가·관리계획
- ⑩ 전기 도면, 기기 세부 사항 등 작업과 관련되는 자료 등
- (2) 정전된 전로 인근에 충전전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활선근접작업을 참조한다(KOSHA GUIDE(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에 관한 기술지침) 참조).

5.2 정전작업계획서 평가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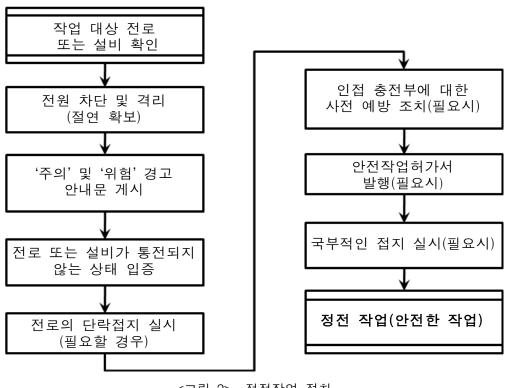
모든 작업에 엄격한 절차를 시행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, 정전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(<그림 2> 참조)

5.2.1 확인(검전)

- (1) 이 단계에서 작업자에게 사전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.
- (2) 대부분의 설비와 전로에서 정확한 표지의 부착은 아주 중요하다. 그러나 표지가 정확하다고 가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과 설비 또는 전로가 정전 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아니 된다.

5.2.2 차단(차단기 개방)

- (1) 활선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기 전에 모든 전기를 전원에서 차단하여야 한다.
- (2) 전원을 차단한 후, 안전을 위해 정전 여부 확인을 5.2.1항의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.



<그림 2> 정전작업 절차

5.2.3 분리(단로기 개방)

- (1) 확실한 전기적인 분리를 위해서 단로기의 개방상태는 예측되는 전압수준으로부터 충분한 절연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.
- (2) 스위치 등의 개폐 수단이 안전한지를 확인한다. 스위치는 '안전 잠금장치', 열쇠가 있는 잠금장치를 사용하여 개방상태(Off)에서 잠겨 있어야 한다.
- (3) 플러그가 뽑혀져있다면, 작업하는 동안 재 삽입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.
- (4) 퓨즈가 제거되었다면, 작업이 끝날 때까지 치워버리거나 박스나 인클로져를 잠가둠으로써 퓨즈나 비슷한 것이 재 삽입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(5) 다수의 작업자들이 하나의 잠금장치(Lock-out)를 사용한다면, 전원을 투입하기 전에

E - 157 - 2016

잠금장치를 해지를 확실하게하기 위해 다수의 열쇠를 갖는 것을 사용한다.

5.2.4 정전작업 알림

- (1) 정전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'주의', '위험' 표지(Tag-out) 를 정전개소에 부착한다.
- (2) '주의'와 '위험' 표지에는 작업자, 책임자의 이름, 연락처, 작업 기간 등을 기재한다.
 - (가) 좋은 LO/TO 시스템은 전원 투입시 재해를 입을 수 있는 작업자에게는 '주의'를 주지시킴과 동시에 설비와 가까운 위치에 '위험' 표지를 부가하는 것이다.
 - (나) 통지나 표시시스템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, 이 시스템의 신뢰 도 확보를 위해 표지나 통지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때는 즉시 철거하는 것이 중요 하다.

5.2.5 정전상태 보증

- (1) 전로를 차단하고 연동장치로 분리시켰다 하더라도 작업할 곳이나 근처가 정말로 정전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2) 설비가 삼상전원이나 설비가 하나 이상의 전원을 갖고 있다면 모든 전원공급이 차단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3) 정전 여부를 확인하는 설비는 검사 전후에 정상 작동하는지를 즉시 점검하여야 한다.

5.2.6 단락 접지

- (1) 만약 위의 예방조치가 실패할지라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, 전로나 설비에 전원 이 공급되지 않도록 접지장치 또는 접지선을 이용하여 모든 단자를 접지하여야 한다.
- (2) 작업장소가 전원 차단점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면 작업하는 장소에 추가접지가 필요하며, 이러한 조치는 전원이 차단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.
- (3) 이러한 절차는 고압 및 특별고압(이하 '고전압'이라 한다)장치와 에너지 축적장치(예 커패시터)에도 꼭 필요하다. 접지 단자와 리드선은 앞의 예방조치가 실패할 경우 흐

E - 157 - 2016

를 수 있는 전류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.

- (4) 저압설비의 접지는 다른 사람이 조작하는 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재충전 위험이 있을 때 특히 필요하다.
- (5) 저압설비 중에는 작업 대상 설비의 접지가 이로 인한 편익보다 인접된 설비의 단락 사고의 위험이 더 클 경우에는 접지가 비현실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.

5.2.7 인접부

- (1) 작업 중인 전로가 정전되었거나 비전기 작업일 때, 인근의 활선부분과의 접촉위험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.
- (2) 여기에는 물리적인 장벽이나 임시 절연을 하여야 한다. 적절한 작업공간과 출입구와 조명 또한 적정해야 한다.

5.2.8 고전압전기작업에 대한 추가 안전조치

고전압 시스템과 고 에너지 시스템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모든 조치가 수행된 이후 안전 작업허가서가 발행되어야 한다(5.3항 참조).

- (1) 이 항은 600 V 이상의 전로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낮은 전압에서도 심각한 화상을 일으키는 단락사고 위험이 있으므로,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. 극히 예외적으로 예상되는 최대 전류가 안전 수준내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상 위험은 적다고 볼 수 있다.
- (2) 고전압 설비는 노출충전부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설계 및 설치되어야 한다. 그러나 안 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의 점검과 시험은 허용된다.
- (3) 고전압은 공간을 통해 아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전격이나 화상재해는 활선부분의 접촉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, 다음 절차를 꼭 준수하여야 한다.
 - (가) 전원 분리는 작업 수행을 위해 정전 부분과 활선 부분사이에 안전한 절연 간격을 가진 장치로 하여야 한다.
 - (나) 전원의 차단점에서 단락 접지는 필수이고 추가 접지도 작업 위치에서는 꼭 필요

하다.

- (다)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설비가 우연히 재 통전될 수 없도록 하나의 열쇠를 가진 잠금장치를 사용해야 한다. 열쇠는 키 세이프나 책임자만 사용가능한 적절한 장소 에 보관하여야 한다.
- (라) 예방조치는 규정에 의한 문서화 시스템으로 보완되어야 한다.
- (4) 교대나 장기간의 작업과 같은 추가적인 절차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.
- (5) 고전압 충전도체에 위험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. 이는 정상적 인 작업이라도 모든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.
 - (가) 적합한 설비, 장치, 예방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전압 활선작업이 안전거리 내에서 허용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.
 - (나) 대표적인 예는 전기 공급자의 가공선로 위의 작업이나 길고 특별히 고안된 활선 작업용 기구를 이용한 작업이다. 이러한 작업 절차는 특별히 마련되고 고도로 훈 련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.
- (6) 고전압 설비를 시험할 때 비슷한 절차 또한 필요하다. 모든 경우에 목표는 활선상태의 고전압 도체에 누군가가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고 절차는 이를 반영해야한다.

5.3 안전작업허가

- (1) 여기에서 안전작업허가서는 정전 또는 활선작업이 안전한지에 대한 내용으로 KOSHA GUIDE(안전작업허가지침)을 따르되, 다음을 참고한다.
 - (가) 허가서에서 주어진 정보는 자세하고 정확해야한다. 어떠한 설비 등이 안전하게 만들어졌는지,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들을 제시하여야 하며 무슨 작업이 완료되었는지를 정확히 나타나야 한다.
 - (나) 허가서에서 제시되지 않는 설비에서 작업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. 이 제약 은 책임자, 감독자를 포함하여 전제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.
 - (다)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므로, 아무도 허가서가 특정하지 않는 어떠한 작업도 해서는 안 된다.
 - (라) 만약 작업 계획이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이 발견되면 기존의 허가는 취소하고 새로운 것이 발행될 때까지 어떤 변경도 해서는 안된다.
 - (마) 작업 계획에서 변경을 승인하고 새로운 안전작업허가서를 발행할 권한을 가진 사

람은 기존 허가서를 발행한 사람이거나 마지막 교대나 부재 주에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이어야 한다.

- (2) 안전작업허가는 기술적 지식 또는 경험을 보유하고 관련 시스템과 설비를 잘 알고 있는 작업자에게만 승인되어야 한다.
 - (가) 특정 설비나 시스템에 관련된 허가서의 발행은 사업주가 문서로 발행하여야 한다.
 - (나) 허가서를 발행하기 전에 작업자는 문서로 스위치 개로, 분리, 정전확인, 개로 잠금, 단락접지 등에 대한 여러 단계를 상세하게 작성하고, 작업 대상 설비와 활선상태 로 있는 인근설비를 확인하고 사전 경고 통지를 해야 한다.
- (3) 안전작업허가서에는 다음 사항이 확실하게 명시되어야 한다.
 - (가) 작업허가서가 누구에게 지정되었는지, 즉 작업에 참여하는 그룹이나 작업책임자
 - (나) 정전 대상 설비명과 그것의 정확한 위치
 - (다) 전로의 분리점
 - (라) 단자가 접지되어 있는 곳
 - (마) 경고 통지가 붙여져 있는 장소와 특수 잠금장치의 설치 장소
 - (바) 수행되는 작업의 내용
 - (사) 작업허가에 따른 다른 위험원의 존재
 - (아) 작업의 과정 중 상세한 예방조치

대부분의 경우, 작업영역을 보여주고 보다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허가서에 도면을 첨부하거나 참고자료로 포함할 수도 있다.

- (4) 전기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안전작업허가서가 발행되어야 한다.
 - (가) 허가서를 발행하도록 지정된 사람은 허가서에 함께 서명하기 전에 작업을 설명하고 작업자들과 세부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완전하게 동의해야 한다.
 - (나) 허가서를 발행하는 사람은 설비가 안전하도록 하는 모든 필요한 행위를 확실히 해야 한다.
 - (다) 개인적인 검사를 해야 하는 일반적인 규칙은 간혹 전력회사와 같이 지리적으로 아주 넓은 것 등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필요하다.
 - 1) 전력회사와 수용가 설비와 같이 어느 정도의 책임과 분리가 필요한 경우, 공동 작업 계획에서 지명된 사람과 설비 보유자에 의해서 연서된 작업 허가서를 마련 되어야 한다.

- 2) 도급자가 발주자의 전력계통이나 설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이다. 이런 경우에 발주자는 분리된 책임에 대해 혼란이 없도록 작업 완료 전에 안전작업허가서를 발행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.
- (5) 허가서를 받은 사람, 즉 작업자는 그 순간부터 모든 예방조치들을 지키고 허가된 작업, 허가된 장소에 국한된다는 것을 지킬 책임이 있다. 만약 허가가 작업책임자에게 발행된다면 그 책임자는 모든 작업자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.
 - (가) 만약 허가서를 발행한 사람이 작업자라면, 다른 사람이 예방조치가 되었는지 감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. 작업을 하는 사람은 그때 자신에게 허가서를 발행하되, 이런 일상적 일이 완전한 안전 절차가 적용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, 자기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
 - (나) 안전작업허가서 수령인은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, 우연한 취소와 설비의 재 통전을 막기 위해 참고로 보관해야한다.
- (6) 작업이 완료되면, 허가서는 추가 접지와 도구를 제거하고 작업장에서 철수하고 다시 설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시받은 작업자들이 서명하여야 한다.
 - (가) 허가서 담당자는 설비가 적절하고 작업이 적합하게 완료 되었는지를 확인한다.
 - (나) 이어서 허가서는 설비에 재송전하기 전에 말소를 위해 원래 발행한 사람에게 반환한다.
- (7) 작업이 일시 중지되었을 때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기존의 허가서는 취소하고 필요한 새로운 허가서를 발행해야 한다.
 - (가) 안전작업허가서의 일시중지는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.
 - (나) 꼭 일시정지가 필요한 경우, 공구와 추가 접지는 철거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작업 허가서가 일시 중지 되었다는 알게 하도록 하는 서면의 절차가 필요하다.
- (8) 안전작업 허가 시스템은 안전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정확하게 완성된 문서를 갖고 있도록 하는 추가 절차가 있어야 한다.
- (9) 감시는 일일 허가서 발행에 관련되지 않는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좋으며, 불합리한 습관과 부정확함을 확인하고 즉시 제거하기 위하여 임시로 하는 것이 좋다.

KOSHA GUIDE E - 157 - 2016

<붙임 1> 전기작업계획서 예시

전 기 작 업 계 획 서

발 주 처 :		시 공 사 :		NO :			작 성:	년 월	일, 작성기	J :
작업번호 :		작 업 명 :		작업개소 :			작성	검토	검토	승인
작업책임자 : (현장대리인)		작업책임자 :		입회자 : (작업 감독)						
작 업 자 :				작업 일정 : (작 업 일)						
위험성평가 결과			현장안전점검표	절연용보호구	절연용방호구	작업책임자 확인	자격자 ?	적격 확인	작업표준활용 여부	
위험성크기		위험성관리계								
(위험등급)		획 및 대책								

작 업 순 서	작 업 내 용	안 전 조 치 사 항 비 고

위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

① 작업의 목적 및 내용, ② 작업자의 자격 및 적정인원, ③ 작업 범위, 작업책임자 임명, 전격·아크 섬광·아크 섬광·아크 폭발 등 전기 위험 요인 파악, 접근 한계거리,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, ④ 전로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(電原) 재투입 절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, ⑤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, 활선작업용 기구·장치 등의 준비·점검·착용·사용 등에 관한 사항, ⑥ 점검·시운전을 위한 일시 운전, 작업 중단 등에 관한 사항, ⑦ 교대 근무 시 근무 인계(引繼)에 관한 사항, ⑥ 전기작업 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, ⑨ 전기안전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작성된 전기안전작업계획서의 평가·관리계획, ⑩ 전기 도면, 기기 세부 사항 등 작업과 관련되는 자료 등